

「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기준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7일

국토교통부장관

**「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기준」  
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**

**1. 개정이유**

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개정(2023.12.26)으로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퍼센트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던 것을 분양주택으로도 공급할 수 있게 됨.

그러나, 현행 「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기준」은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어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에 맞추어 분양주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수정할 필요가 있음.

**2. 주요 내용**

가. 재정비촉진지구 내 용적률 완화 시 제공 주택 유형에 분양주택 추가(안 제1조)

나. 용적률 완화에 따라 제공되는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의 주택가격 규정

(안 제2조, 제3조)

다. 제3조 신설에 따른 조문 이동(안 제4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주택정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molit.go.kr>→정보마당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 정 안	수 정 안	의 견

나. 보내실 곳

-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6동 454호

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

- 전화(☎) 044-201-3391, 3887 / 팩스 (044) 201 - 5532